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33

발의연월일: 2020. 12. 18.

발 의 자:유의동·한정애·김회재

이형석・박 정・장철민

유재갑 • 송옥주 • 송갑석

조승래 • 윤재옥 • 황보승희

오영환 · 남인순 · 조수진

정진석 • 김수흥 • 김남국

안병길 • 이원욱 • 노웅래

임종성・강득구・홍영표

김원이 · 서범수 · 전혜숙

유정주 의원(28인)

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는 기후위기를 인류 생존의 문제인 동시에 경제·환경·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음.

국내의 경우 지난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나섰으나,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였고,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있음.

2021년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의 출범을 앞두고, 협정의 성실한 이행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제도 기반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차원의 계층적 기후위기대응 계획의 수립·시행을 추진하고 파 리협정의 목표에 부합하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며, 온실 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실시, 매년 이행실적의 평가·점검과 국 회보고 등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제도를 마련·운영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지구온난화가 초래하는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고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시행계획을, 시·도지사는 광역종합계획 및 광역시행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둠(안 제15조).
- 라. 정부는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안 제17조 및 제18조).
- 마. 정부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에 명세서 작성, 목표 준수 실적 보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되, 이와 관련된 정보 제공, 재정·세제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바. 효율적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
- 사. 기후위기 감시·예측, 기후위기 영향평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운영 등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제도를 마련함(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 아.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내외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운용 ·관리하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의안번호 제6737호), 임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6호), 유의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구온난화가 초래하는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지구온난화"란 인간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농도가 증가함으로써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 2. "기후변화"란 인간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활동으로 야기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 3. "기후위기"란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대기 중 온 실가스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일반적인 기후변화를 넘어서 극한 이상 기후현상과 재난적 영향에 따른 심각한 경제적·환경적·사

회적 피해와 인간 및 생태계의 생존이 위험에 직면한 상황을 말한다.

- 4. "기후위기 대응"이란 극한 이상 기후가 야기하는 다양한 경제· 환경·사회 분야 등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하며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말한다.
- 5.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3)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 6. "온실가스 배출"이란 인간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 7.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총배출량"이라 한다)이란 온실가스 물질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해당 물질의 배출량에 해당 물질의 지구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얻은 양의 합계량을 말한다.
- 8. "지구온난화지수"란 각각의 온실가스 기체를 기준이 되는 이산화 탄소와 비교하였을 때 대기하층에서 성층권까지의 상대적인 가열

정도를 가리키는 수치로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수를 말한다.

- 9. "탄소중립"이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 제 2조제5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 10. "온실가스 감축"이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 11.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해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 12. "기후위기 영향"이란 기후위기에 기인한 물리적 환경 또는 생물 상의 변화로서 자연적 생태계 및 관리되는 생태계의 구성·회복력 또는 생산성, 사회경제체제의 운용 또는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경 제·환경·사회에 현저히 심각한 영향을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 13. "기후위기 영향평가"란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위기대응종합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 등을 통하여 기후위기의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 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기후위기가 야기하는 심각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 14. "기후위기 적응"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조치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15. "기후정의"란 기후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 야기에 관한 합리적인 책임을 다함으로써, 사회·경제적 그리고 세대 간불평등의 해소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 16.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일자리가 사라짐에 따라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피해와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기금 조성과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17.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제3조(기후위기 대응의 기본원칙) 기후위기 대응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지속가능발전과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한다.
 - 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과 「파리협정」(이하 "기후변화협약·협정"이라 한다)을 준수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이행한다.
 - 3. 이용 가능한 최선의 기후과학적 근거와 지식에 기초하여 기후위

- 기 영향의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범 국가적으로 폭넓은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비상적인 대응조치를 추진하 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 4.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비용의 부담은 사회 구성 원의 책임과 능력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 5. 기후위기의 영향에 취약한 노동자와 계층과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반영한다.
- 6. 온실가스 감축대책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
- 7. 바다와 육지 등 생물다양성의 파괴를 막기 위하여 보전, 예방, 그리고 복원 등의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흡수원과 기후위기 적응 기능을 유지 및 확대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조성한다.
- 8.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 여를 보장하고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한다.
- 9.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방식을 확산하여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추구한다.
- 10.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달성하는 데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견인한다.
- 11. 국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

-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에 관한 국제적 합의 또는 규범 등을 고려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단기적인 기후위기 대응 목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 응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에 부합하는 법제화와 조 데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및 공개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및 국민이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환경·사회적 문제와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기후정의와 정

- 의로운 전환을 실현하여야 한다.
-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자원 개발 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개발도상국가와 지역에 대한 정책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시책이 미세먼지 및 에너지 정책의 정합성을 기반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사업의 영향과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후위기 대응 시책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스스로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위기 문제의 최종적 해결자임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적극 실천하 여야 한다.
 - ② 국민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후위기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기후위기와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기후위기 대응계획 등

- 제8조(기후위기 대응 국가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이하 "국가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한다.
 - ② 국가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내외 온실가스 농도 변화 및 기후위기의 감시 · 예측
 - 2. 국내외 기후위기 추세 및 미래 전망
 - 3. 온실가스 배출·흡수 및 에너지 수급의 현황과 전망
 - 4.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 5.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
 - 6. 기후위기의 영향 및 취약성 평가
 - 7.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재해방지 등 적응대책 수립
 -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 10. 기후위기 대응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용 및 조달 방안
- 12. 기후위기 대응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 홍보에 관한 사항
- 14.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 15.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정부가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국가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 기대응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및 계획이 국가종합계획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부터 제시받은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정부 및 시·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균형적

- 으로 고려하여 국가종합계획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역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국가종합계획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간사인 환경부장관이 수립을 총괄하여 지원하며, 그외의 수립 방법·절차 의견 제시·반영 및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중앙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종합계획을 추 진하기 위하여 국가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중앙시 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시행계획의 목표
 - 2.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의 구체적 내용
 - 3. 전년도 시행계획의 목표에 따른 실적 및 평가
 -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때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④ 중앙시행계획의 수립 방법·절차와 정부 내의 업무분담체계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광역종합계획 및 광역시행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종합계획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종합계획(이하 "광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광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광역종합계획 및 광역시행계획은 국가종합계획 및 중앙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시·도별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가 광역종합계획 또는 광역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지형적 특성,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수급 현황,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영향 최소화 및 기후위기 적응 등의 시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가 광역종합계획 및 광역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시·도지사가 광역종합계획 또는 광역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에 따른 광역종합계획 및 광역시행계획의 수립·시행·변경·평가 및 그 밖에 기후위기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기초종합계획 및 기초시행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종합계획과 광역종합계획에 따라 10년을 단위로 하는 관할 기초자치 구역의 기후위기 대응 종합계획(이하 "기초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종합계획과 광역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시행계획(이하 "기초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수급현황,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영향 최소화 및 기후위기 적응 등의 시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2항에 따른 기초종합계획 및 기초시행계획의 수립·시행·변경·평가 및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중앙시행계획 및 광

역시행계획의 이행사항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시 받은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기관의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중앙시행계획의 시행 결과 및 차년도 중앙시행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국가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정부는 기후변화 협약·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기후변화에 관 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기후변화협약 국가보고서
 - 2.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3. 국가 기후위기 적응보고서
 - 4. 투명성 보고서
 - 5. 그 밖에 기후변화 협약·협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보고서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국가보고서 등의 작성 및 자료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등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①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주요정책

- 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이 경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을 간사위원으로 둔다.
- ⑤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중에서 임명하며, 위촉 위원은 기업,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 가 위촉하다.
-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후위기 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 2. 국가종합계획 및 중앙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률 및 제도개선
- 4.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등 국제협력
- 5. 제17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사항
- 6. 제14조에 따른 국가보고서 등의 작성에 관한 사항

- 7.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 · 시행에 관한 사항
-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 연구개발
- 9.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산업의 육성
- 10.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정의로운 전환
- 11.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기금 재원 금융 세제에 관한 사항
-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13. 그 밖에 위원장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⑧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기후위기 대응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국가종합계획 및 중앙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 전문위 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지원 등에 관련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제17조(온실가스 감축목표) ① 정부는 「파리협정」 제2조에 따른 전 지구적 장기 온도목표의 추구를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1000분의 244 이상 감축하고, 205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6 년부터 2030년을 최초로 하는 단기 감축목표를 2025년에 설정하고 그 후로 매 5년 마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단기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이전 감축목표 보다 가장 높은 의욕 수준을 반영하여 진전된 원칙을 추구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단기 감축목표에 관한 중앙시행계획과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의 중앙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감축목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기후위기에 관한 과학적 지식 · 정보
- 2. 기후위기에 관한 국제협약 협정
- 제18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분석·검증·작성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관리체계(이하 "종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하고 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산림 등 소관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작성·분석·검증· 관리하거나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국제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문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작성·분석·검증하여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체계 구축, 종합정보센터 운영, 세부적인 정보 및 통계의 작성·분석·검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① 정부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하 "목표관리제"라고 한다)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1.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및 감축 목표
 - 2.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이용효율 목표

- 3. 에너지 자립 목표
- 4.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 ②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 세부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고 한다)별로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업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등의 사용이력, 기술수준, 국제경쟁력, 국가목표 등 국내 여건 및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관리업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그 목표 준수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세서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목표 준수 실적에 대하여 배출권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관리업체의 목표 준수 실적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달성을 위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이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⑥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고 제5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재정·세제·경영·기술상 지원 등을 할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공개) ① 정부는 제19 조제3항에 따른 명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명세서에 포함된 주 요 정보를 관리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다.
 - ②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관리업체로부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명세서의 공개 범위·방법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① 정부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및 국가인권 위원회
- 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3.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② 제1항1호부터 4호까지의 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표의 이행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제1항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2조(배출권거래제의 도입) ① 정부는 제17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기능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이하"배출권거래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및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 제도를 포함한다.
 - ③ 배출권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 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장 기후위기 과학 및 적응

- 제23조(기후위기 감시·예측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고 기후위기를 감시·예측하고 평가모델을 개발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감시 · 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기후과학의 정보와 기후영향의 전망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24조(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평가) ①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생 태계, 대기, 수자원·수질, 건강·보건, 농업·축산·수산, 산림, 해 양, 국토, 연안, 안전·방재, 산업·에너지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 성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결과를 국 가종합계획 및 중앙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결과를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25조(기후위기 영향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기후위기 영향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평가에 관한 범위와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제26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 등) ①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기후위기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피해 및 재난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제15조에 따른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 2.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3. 부문별ㆍ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 4. 부문별 · 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 5.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 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

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국가종합계획 및 중앙시행계획 수립시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⑥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⑦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응대책의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 제27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 재난·재해, 농업, 축산, 수산, 산림, 해양, 물관리, 생태계, 국토, 연안 등 부문별 적응대책과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 등 이행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행체계 구축에 관한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계획 등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기후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응능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기적인 적응 목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의 영향에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⑥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이하 "취약기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공공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① 취약기관의 장은 공공대책을 수립하거나 이행실적을 작성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제28조(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지정 등) ① 환경부 장관은 제26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가기후위기적 응센터(이하 "적응센터"라고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적응센터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적응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응센터의 지정·절차·운

영ㆍ평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기금의 설치 및 운용

- 제29조(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시급하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성격에 따라 온실가스감축계정, 기후위기적응계정, 기후 위기연구개발계정, 기후위기국제협력계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의 예수금(預受金)
 - 4.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수입금
 -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에 사용한다.
 - 1. 기후위기 대응 추진기반 구축
 -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사업 지원

-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지원
- 4. 기후위기 예측과 감시·예측을 위한 정부 및 연구기관의 사업 지 원
- 5.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원
- 6.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 7. 민간단체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 홍보 및 인력양성 사업의 지원
-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 10. 정부의 융자금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11.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기후위기 대응 교육 · 홍보 · 협력 등

- 제32조(교육 및 홍보)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33조(과학기술 육성과 인력양성) 정부는 기후위기에 장기적으로 대 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육성과 과학기술 인력양성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4조(민간단체 등의 기후위기대응활동 촉진) ① 정부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등이 기후위기 대응 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5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 록 한다.
 - ② 정부는 개발도상국가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 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한 국제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 제3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정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공개를 한 자
 - 2. 제19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